

# 신북면 종합감사 결과

## I. 감사개요

### 1. 감사배경 및 목적

-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·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
- 수입, 지출,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
-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·누락·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

### 2. 감사대상 및 범위

- 감사대상 : 신북면
- 감사기간 : 2018. 11. 20. ~ 2018. 11. 23. (4일간)
- 대상기간 : 2016. 11. 22. ~ 2018. 11. 19. (2개년)
- 감사자 : 기획감사실장 외 6인

### 3. 감사중점사항

- 공사·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
- 기획, 총무행정, 문화·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
- 농정업무,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
-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
-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
-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
-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

#### 4. 주요위반사항 요약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일반행정 분야	사무인계 · 인수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북면에서는 ◎◎팀장 ◎◎◎(2018. 7. 17 보직변경)외 3명이 보직변경 되었음에도 사무인계 · 인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. 【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, 제70조, 영암군 사무인계·인수규칙】</li> </ul>
	주민등록 정정신고 처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북면에서는 ◎◎◎ 외 10건에 대해 동일 주소내 세대분리의 경우(별도의 부엌, 출입문 등을 이용하는 경우)확인 후 신고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, 별도의 확인사항 없이 부모와 자녀를 세대 분가 처리하여 거주사실과 다르게 신고를 처리하여 주었으며, 특히 ◎◎◎의 경우 부부간에 동일 주소지에서 세대분리하여 주민등록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. 또한, 주민이 전입 신고서를 착오로 기재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특수주소 정정의 경우에도 지적공부의 확인 또는 인우보증으로 정정토록 되어 있으나, ◎◎◎ 외 2세대에 대해 지적공부 없이 정정처리를 하여 신고처리에 부적합한 사실이 있음. 【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3조, 동법시행령 제20조, 주민등록사무편람(행정안전부,2017)】</li> </ul>
세출분야	신용카드 발급대장 및 미작성 및 카드사용부 작성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북면에서는 2019.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3개, 유류구매카드 2개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작성 · 비치하지 않아 신용카드별 발급일자, 갱신 내역 등의 정보를 알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지방공무원법 제48조, 영암군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,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】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세출분야	계약상대자 선정 부적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북면에서는 용역 계약상대자를 선정 함에 있어,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(●●●, ●●●●●●● 대표)으로 선정하여 계약하였으며, 2017. 04. 04. ●●●과 당초 안전 건설과의 배정물량보다 축소된 총 5개소로 계약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량이나 정확한 산출내역도 없이 전체 사업비 4,000천 원으로 계약, 지출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】</p>
세무분야	재산분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·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, 미신고 납부한 7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(재산분) 15건 4,313,23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재무과-17115(2016.7.13.), -18006(2017.7.7.) -17356(2018.7.3.)호 및 영암군 사무분장규정】</p>
	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·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, 과세누락된 4개 법인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법인균등분 주민세 8건 440,0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재무과-18064(2016.7.25.), -20110(2017.7.30.), -120875(2018.8.10.)호 및 영암군 사무분장규정】</p>

분야별	제 목	주요 위반사항
사회복지 분야	기초수급대상자 연간계획 미수립 및 방문상담 이행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017~2018년에는 대상자 283세대중 223 세대만 연 1회이상 방문상담을 실시하고, 8세대에 대해서는 2년동안 방문상담을 한번도 하지 않는 등 대상자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.            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】</li> </ul>
	노인 이·미용권 지원대상자 홍보 및 관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우리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으로 만 65세노인에 대하여 분기별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으며, 신규대상자도 변동일 다음달부터 지원하여함에도 88명에게 110매를 미지원 하는 등 복지홍보 및 대상자 복지관리에 소홀히 하였음.            【영암군 노인목욕권 및 아·미용권 지원조례】</li> </ul>
	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업무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자로 하여금 급여관리 방법 및 급여 관리상황을 모니터링 하여야 하며, 급여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현금 지출시에는 영수증으로 관리하여야 하나, 신북면에서는 의사무능력(미약)자 급여관리 실태조사 결과 권성하 외 1인에 대하여 영수증 미처리 및 체크카드 미사용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고도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(미약)자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           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】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요위반사항
농업분야	‘16 ~ 18년도 가축통계조사 업무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북면에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면서 마을담당공무원의 조사 복명서 취합없이 조사결과를 제출하는 등 가축통계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농업통계조사규칙 및 실시요령】</li> </ul>
	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검토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북면에서는 2017년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시 부동산매매계약서 15건, 증여 계약서 3건, 교환계약서 1건 등 19건에 대하여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실이 있음. 【농지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,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,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심사 요령 제7조 제2항】</li> </ul>
	벼 육묘용 상토 지원사업 업무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북면에서는 2017~2018년도 1,344농가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확정함에 있어 적격 농지(논)로 확인된 필지수와 면적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날인하도록 되어있으나, 신청자 자격유무와 지급대상자 적격농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. 【친환경농업과-647(2017.1.12.), -5635(2017.4.5.)】</li> </ul>
건설도시 분야	건설폐기물 처리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북면에서는 상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(폐콘 및 아스콘) 6.0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는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 【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】</li> </ul>

분야별	제 목	주요 위반사항
건설도시 분야	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북면에서는 상기 『신북 학동 신월~원학동 농로 재포장공사』 외 1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발주처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 기술자 1인을 2개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</li> </ul> <p>【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,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, 제35조 제3항】</p>
	환경관리비 정산 소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신북면에서는 『신북 유곡리 2구 농로포장공사』 외 3개소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비는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하였으나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 내역을 미 확인하고 준공 처리 되었습니다. 따라서 발주부서에는 준공 전 환경관리비 정산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, 계약금액을 조정 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256천 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.</li> </ul> <p>【건설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】</p>